

심 사 보 고 서

2011. 5. 16.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1년 4월 27일

나. 제출자 : 고기판 의원외 4인

다. 회부일자 : 2011년 5월 6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6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1. 5. 1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고기판 의원)

가. 제안이유

-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새마을의 날을 지정하여 기념하고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이 새마을사업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안 제3조)
 - 매년 4월 22일을 새마을의 날로 정하고 행사 등 사업 실시
- 새마을사업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대비 보험 또는 공제가입(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 현 영)

- 본 개정조례안은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계속적 추진을 위하여 새마을의 날을 지정 매년 기념하도록 하여 새마을정신의 가치를 높이고자 함.
- 주요 개정사항으로 현행 조례명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로 변경 하는 것은 상위법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과 같은 제명으로 변경하여 법 제명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한 것임.
- 안 제1조에서 목적 규정 개정은 간결하면서 적절하고 종합적으로 표현하기 위함.
- 안 제2조에서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용어내용이 혼동되지 않도록 법규정에 준하여 명확하게 표현하고자 함.
- 안 제3조제1호는 2011. 3. 8일 일부개정된 상위법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서 “매년 4월 22일을 새마을의 날로 정하고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 토록 규정하였음.
- 안 제7조에 보험 가입 조항 신설은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이 새마을사업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임.
- 이 개정조례안은 반 세기 만에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변신한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며 개발도상국들의 롤모델인 새마을운동을 더욱 발전된 운동으로 계승 발전시키고 다소 약화되어 가고 있는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새로이 정립한다는 관점에서 시기적절한 개정이며 상위법 개정과 관련된 개정으로 법체계 및 자구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5
----------	----

발의년월일 : 2011년 4월 일

발의년월일 : 2011년 4월 일

1. 제안이유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구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새마을의 날을 지정하여 기념하고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이 새마을사업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안 제3조)

- 매년 4월 22일을 새마을의 날로 정하고 행사 등 사업 실시

나. 새마을사업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대비 보험 또는 공제가입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8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국가 및 구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운동조직으로서 새마을운동 영등포구지회, 새마을지도자 영등포구협의회, 영등포구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중앙회 영등포구지부를 말한다.
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예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 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매년 4월 22일을 새마을의 날로 정하고 적합한 행사 등 사업 실시
2. 새마을지도자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의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새마을지도자 행사
3. 선진지 견학 및 연수지원
4. 방역활동 등을 비롯한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제5조(새마을기 게양) 구청사, 각 주민센터 청사, 그 밖에 영등포구 산하 공공기관 청사에서는 국기게양대에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게양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4조 각 호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새마을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서울특별

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실적 및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이 새마을사업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새마을운동조직으로 하여금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735호, 2008.06.12 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새마을문고(이하 “새마을지도자”라 한다)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구정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p> <p><신 설></p> <p>제2조(예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새마을지도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p> <p><신 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새마을지도자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 새마을지도자 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u>격려</u> 3. <u>기타</u>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국가 및 구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운동조직으로서 새마을운동 영등포구지회, 새마을지도자 영등포구협의회, 영등포구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중앙회 영등포구지부를 말한다. 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p>제3조(예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매년 4월 22일을 새마을의 날로 정하고 적합한 행사 등 사업 실시</u> 2. 새마을지도자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u>격려</u> 4. <u>그 밖에</u>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새마을지도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영등포구 새마을지도자 행사
3. 선진지 견학 및 연수지원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제4조(새마을기 게양) 구청, 각 주민센터, 기타 구청 산하공공기관에는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게양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지원)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의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새마을지도자 행사
3. 선진지 견학 및 연수지원
4. 방역활동 등을 비롯한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제5조(새마을기 게양) 구청사, 각 주민센터 청사, 그 밖에 영등포구 산하공공기관 청사에서는 국기게양대에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게양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4조 각 호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새마을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때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실적 및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이 새마을사업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새마을운동조직으로 하여금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